



임대 주택 거주 적합성 프로그램

실내 온도 기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에어컨이 없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위한 실내 고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내 최고 온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열탈진이나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에 있는 임대 주택은 거주 가능한 모든 공간의 실내 온도를 82°F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책임

집주인은 거주 가능한 모든 공간의 온도를 82°F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 가능한 공간이란 수면, 일상생활, 요리 또는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는 퇴거 조치, 추가 요금 부과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에어컨 등 이동식 냉방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일반 선풍기나 독립형 에어컨을 사용할 때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세입자는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 천장형 선풍기나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기기 설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설치 최소 5일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이동식 냉방 기기의 설치 및 사용은 안전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 주택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보복 조치, 괴롭힘 및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nt.lacounty.gov에서 확인하세요.

비용

- 집주인은 이동식 냉방 기기의 설치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및 사업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문의하세요.
- 민원 처리 및 현장 점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 주택 거주 적합성 프로그램(RHHP)의 임대 주택 1세대당 수수료가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규정 집행 및 준수

- 규정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연 냉방 방법을 알아보세요.
- 임대 주택 10세대 이하를 소유한 소규모 집주인은 2027년 1월 1일까지 각 임대 주택에서 거주 가능한 공간 중 최소 한 곳의 온도를 82°F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32년 1월까지는 임대 주택 전체의 온도를 82°F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 자연 냉방만으로 실내 온도를 82°F 이하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기계식 냉방 설비를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집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연 냉방이나 이동식 냉방 기기로 실내 최고 온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집주인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국(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최대 2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